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2/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4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이유

- 청소년수련시설의 증가로 행정수요감소와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자연학습원시설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,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단체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자연학습원을 폐지

### □ 주요골자

- 폐지조례 시행일 : 임대(대부)계약체결일
- 자연학습원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일로함

### □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 및 제5조

### □ 따로붙임

1.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(안) 1부
2. 참고자료(근거법령내용) 1부 끝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(조례1124호 1982.2.15)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연학습원시설의 임대(대부)계약 체결일부터 시행한다.